

☞ 보도일시:

2020. 6. 18(목) 석간

* 인터넷 2020. 6. 18(목)

11:00 이후

☞ 총 22쪽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과장 임영미(044-202-7682), 사무관 곽철홍(044-202-7512)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건설안전과

과장 홍성준(044-201-4987), 사무관 강나루(044-201-4988)

과장 한명희(044-201-3573), 사무관 장은석(044-201-3574)

❖ 소방청 화재예방과

과장 배덕곤(044-205-7440), 소방령 이인중(044-205-7441)

❖ 법무부 공공형사과

과장 권상대(02-2110-3531), 검사 전철호(02-2110-3533)

❖ 국무조정실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

팀장 이성민(044-200-2555), 사무관 연현석(044-200-2556)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정부,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발표

- ❖ 발주자 : 공사 전 적정 공사기간 산정, 무리한 공기 단축 시 형사처벌
- ❖ 건축자재 : 샌드위치 패널은 준불연 이상 성능 확보, 우레탄폼 등 내단열재 및 창호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신설, 화재안전 품질인정제도 도입
- ❖ 작업 중 안전조치 : 가연성 물질 취급과 화기 작업의 동시 작업 금지, 강제환기장치(예: 제트팬 등) 설치, 안전전담 감리 확대
- ❖ 관리·감독 : 위험작업 실시간 파악 시스템(신고제), 지자체의 지도 근거 마련, 다중인명 피해 범죄에 대한 특례법 제정

- 정부는 6월 1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법무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하였다.
-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이후, 동일한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 노동부, 국토부, 소방청, 국조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의 화재사고 발생 위험요인들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동 대책은 '16년, '19년 범정부 화재대책(완공된 건축물 대상)과는 달리 시공중에 있는 건설현장의 화재안전 대책을 중심으로 하였다.

- 이번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의 중점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기업이 비용 절감보다는 근로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 지금까지는 비용증가에 대한 우려로 대형화재 발생위험이 있었던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제한 등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 둘째, 건설공사의 단계별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계획단계의 적정공기 보장부터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최소화 대응체계 구축까지 건설공사 전체단계의 위험요인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셋째, 안전 관련 규정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도록 개선한다.
 - 화재 등 사망사고 위험요인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위험현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기업의 안전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세부내용 >

① 건설현장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만든다.

- 첫째, 계획단계부터 건설공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 공공 및 민간 공사 모두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의무화하고,
 -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업체 명단 공개를 통해 적격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화재 등 사망사고 위험요인 중심으로 개편하여 현장의 안전활동 지침서로 활용성을 강화한다.
 - 또한, 대형사고 발생 시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 보험료 일부를 발주자가 부담토록 하여 안전관리 우수 시공사가 수주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 둘째, 화재발생 시 대형인명사고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건축 자재의 화재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 현재는 600㎡ 이상 창고, 1,000㎡ 이상 공장에만 적용되던 마감재 화재안전 기준(난연성능 이상)을 모든 공장·창고까지 확대하고,
 -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확보 하도록 하며, 심재의 무기질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화재안전 기준이 없었던 우레탄폼 등 내단열재에 대해서도 난연 성능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 난연성능 미만 단열재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고, 단열재 공사 중에는 전담감리를 배치해야 한다.
 - 또한, 인접건축물과의 이격거리에 따라 방화유리창을 설치토록 하고, 창호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 아울러,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여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성과 생산업체의 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 화재에 안전한 건축자재가 사용되도록 모니터링 확대 및 불시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 셋째, 화재위험 작업은 안전조치를 반드시 이행한 후 작업이 진행 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가연성 물질 취급작업과 화기 취급작업의 동시 작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리에게 공사중지 권한을 부여한다.
- 인화성 물질 취급작업시에는 가스경보기, 강제 환기장치 등 안전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할 계획이다.
- 위험작업에 대한 현장 감시기능도 강화한다.
 - 안전 전담감리를 도입하여 공공공사는 모든 규모, 민간공사는 상주감리 대상공사에 배치하도록 하고,

- 원청에게는 사전에 위험한 작업의 일시·내용·기간 등 정보를 파악하여 하청업체들의 작업조정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 시공 중인 건축물에도 화재안전관리자 선임의 의무화하고,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넷째,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체계를 만든다.

- 적정 대피로 확보, 비상대피훈련 등 긴급조치계획을 반드시 수립한 후 착공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화재위험이 높은 작업 착수 후에는 정기적으로 비상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감리 등이 확인해야 한다.
- 또한, 효과적인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를 위한 대응체계도 세밀히 마련할 계획이다.

②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촘촘하게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 첫째, 건설현장에 대한 적시 점검·감독을 위해 위험작업 시기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건설현장에서 화재·폭발 등의 위험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작업시기를 신고하도록 하고,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세움터의 착공신고 정보 등을 전산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위험현장과 작업시기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한 후,
 - 이를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여 적시 점검·감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중장기적으로는 위험 현장 정보를 자동 추출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정보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 산업재해 정보·사업장의 안전보건 정보 등을 데이터화하고, 이를 통해 고위험 사업장, 취약시기 등을 자동으로 추출한 후 적시에 지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 둘째, 지자체·민간순찰자·관계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위험작업에 대한 현장점검과 감독을 강화한다.**
 - 지자체가 **현장을 지도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자체별 산재예방 계획 수립 및 현장 지도를 하도록 하고,**
 - 중앙정부는 위험작업 시기 등 현장정보 공유와 함께 재정 및 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다.
 - 안전지킴이와 같이 건설분야 퇴직자 등 전문성을 지닌 민간인력을 채용하여 건설현장에 대한 **순찰을 대폭 강화한다.**
 - 지자체와 민간인력의 순찰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여전히 경시하는 현장은 즉각 **패트롤 점검 및 감독과 연계하고, 불시감독을 원칙으로 실시한다.**

③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노동안전 경각심을 제고하도록 한다.

- 먼저, **법정형이 상향된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1.16 시행)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해 구형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양형 위원회와 양형기준 개선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기업의 경제적 제재와 경영책임자의 사업장 안전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 다중이용시설, 산업재해 등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다중 인명피해범죄에 대한 특례법 제정도 추진한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천 화재사고를 비롯하여 일터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고 전하면서,
 -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현장에서 실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기업의 경영책임자들이 안전을 외부의 규제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경영의 핵심가치라는 인식을 가진다면 우리의 일터는 획기적으로 변할 것이며,
 - 이미 많은 기업에서 경영책임자가 안전상황판을 설치하여 매일매일 직접 체크하는 등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안전아이디어를 실행하고,
 - 그런 기업일수록 근로자들도 안전수칙 준수를 철저히 실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 “정부도 우수 실천사례들이 크고, 작은 현장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곽철홍 사무관(☎044-202-7512),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강나루 사무관(☎044-201-4988), 건설안전과 장은석 사무관(☎044-201-3574), 소방청 화재예방과 이인중 소방령(☎044-205-7441), 법무부 전철호 검사(☎02-2110-35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 추진 배경

< 대책 마련 지시사항 >

- 피해자·유가족 지원 및 실효성 있는 화재안전 대책 마련 지시
 - * 대통령 긴급지시 1, 2호(4.29, 4.30), 수석보좌관 회의(5.6)
- 건설현장 대형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범정부 TF 구성·운영 지시
 - * 총리 지시사항(4.30 관계장관회의)

- '08년 「이천 냉동창고 유사재해 재발방지 대책」, '16년 「화재저감 종합대책」, '19년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에도 불구하고 '20.4월 이천 물류센터 건설현장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재발
- '16년, '19년 화재대책은 주택, 고시원, 전통시장 등 완공된 기존 건축물의 화재 예방을 중심으로 수립·추진
 - 다만, 작업공정이 수시로 변화하고 화재·폭발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시공 중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대책으로는 미흡
- 금번 이천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건설현장에서 유사한 화재·폭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원적 대책을 마련

< 그간 화재예방대책 주요내용 >

- ◆ '08년: 건설현장 안전관리 제도 보완을 위한 ①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확대 ②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확대 등 개선
- ◆ '16년: 주택, 피난약자 거주시설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①노후전기 시설 개선 ②담배꽂초와 불법 소각 행위 단속 강화 등 추진
- ◆ '19년: 고시원, 의료기관 및 전통시장, 석유·가스 저장시설 등 취약시설 관리를 위한 ①전기설비 안전기준 강화 ②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및 비용지원 ③석유·가스 저장시설 검사 강화 등 다양한 정책 추진

II. 건설현장 화재사고 현황

- '08년~'19년, 건설현장 화재사망사고는 총 109건(사망 182명, 부상 1,730명)
 - 주로 ①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②마감공사 단계의 ③유증기 발생 또는 단열작업 중에 ④용접·용단의 불꽃 또는 전기누전에 의해 발생
- 건설현장의 화재사고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공사장소별로는 물류·냉동창고 41명(22.5%), 공장 39명(21.4%), 주거상가에서 26명(14.4%) 발생
 - 작업공정별로는 마감공사 97명(53.3%), 구조물 공사 34명(18.8%), 토공사 32명(17.6%), 기타 부대공사에서 19명(10.4%) 발생
 - 작업종류별로는 용접·용단작업 41명(22.5%), 단열작업 40명(22.0%), 방수작업 15명(8.2%), 절단작업에서 13명(7.1%) 발생
 - 점화원별로는 용접·용단 불꽃 51명(28.0%), 전기누전 19명(10.4%), 난로소각 10명(5.5%), 그라인더 8명(4.4%)임
 - 기인물별로는 유증기로 인해 88명(48.4%), 탱크(드럼통) 18명(9.9%), 단열재 17명(9.3%), 인화성 액체로 10명(5.5%) 발생

Ⅲ. 화재사고 재발 요인

□ 대형화재의 직접적 원인제거 미흡

- 가연성 건축자재인 샌드위치판넬, 뿔칠 우레탄 등 대형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자재를 여전히 사용
- 위험작업들이 사전조정 없이 혼재 또는 동시에 진행

□ 화재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규정이 미작동

- 적격업체 선정 또는 적정공사 기간 산정 대상이 제한적
- 인화성물질 취급 작업시 환기장치, 가스경보기 등 안전설비 미설치
- 작업계획서상의 작업시기, 공법 등이 실제 현장과는 불일치
- 안전관리자, 화재감시자 등 현장 안전담당자들의 역할 부족
- 화재발생시 대피로 확보, 비상훈련 등 화재 대응체계 미흡

□ 위험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불충분

- 건설현장의 작업공정은 수시로 변화하여 위험 현장·작업에 대한 실시간 파악이 어려워 적시 점검·감독 곤란
- 산업안전감독관 등 행정인력이 부족하여 위험한 사업장을 모두 점검·감독하기에는 한계

□ 기업의 안전경영에 대한 관심과 투자 부족

- 기업의 관심이 비용 절감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대형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처벌도 미미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안전경영을 유도하기에는 한계

건설공사 단계별 화재 위험요인 및 실태

	발 주	설 계	시 공
단계	계획 → 견적 → 입찰	기획 → 설계	착공 → 토공사 → 구조물공사 → 마감공사 → 부대공사
위험요인 (Ris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 절감 ▪ 안전관리 불량업체 선정 ▪ 공사기간을 짧게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안전 중심 ▪ 저가자재 사용설계 ▪ 임시소방시설 기준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규정 미작동 <p style="text-align: center;"><공사별 사망사고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공사 (32명, 18%) ▪ 구조물공사 (34명, 19%) ▪ 마감공사 (97명, 53%) ▪ 부대공사 (19명, 10%)
관련 제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적격업체 선정 ② 적정 공사기간 확보 ③ 위험공법으로 변경금지 ④ 산재예방비용 계상 (안전관리비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방화에 지장없는 마감재·단열재 사용 (불연, 준불연, 난연재료) ⑥ 샌드위치패널 등 건축안전 모니터링 시행 중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⑦ 유해위험방지계획서 ⑧ 환기 조치 의무 ⑨ 안전관리자, 화재감시자 ⑩ 안전보건관리비 ⑪ 임시소방시설
이행실태 및 문제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② 적격업체 선정 및 적정공기 산정은 공공공사에 한정, 벌칙 없음 ③ 위험공법으로의 변경이 있으나 처벌은 미미 ④ 근로자 재해보험은 임의가입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일정규모 이상에만 난연성 자재 사용 * 바닥면적 600m² 이상 창고, 1,000m² 이상 공장 등 ⑥ 내부 단열재 및 창호 화재 안전기준 및 마감자재 품질 인정제도 부재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⑦ 공정변화 빈번, 위험작업 동시 진행, 위험작업 정보 부족 - 위험작업 시기 파악 곤란 - 계획서상의 작업과 실제작업 불일치 - 안전매뉴얼 기능 부족 ⑧ 환기장치 설치의무 없고 재정지원도 미흡 ⑨ 안전담당자들이 서류작성 치중, 현장점검 소홀 ⑩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충분, 투명성도 결여 ⑪ 임시소방시설 기준이 공사 중인 현장에는 일부만 적용

IV.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목표

근원적 문제 해결을 통한 건설현장 화재사고 근절

중점 추진 방향

1. 비용 절감보다는 근로자 안전 중심으로 기업 경영 유도
2. 건설공사의 단계별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지속적 관리
3. 안전 관련 법·제도의 현장 작동성 강화

추진 과제

1. 건설현장 화재 안전성 강화
 - 1) 건설공사의 사전 안전성 확보
 - 2) 건축자재 화재안전 기준 강화
 - 3) 화재위험 작업 중 안전조치 강화
 - 4)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
2. 위험작업 촘촘한 관리·감독
 - 1) 위험작업 실시간 파악 시스템 구축
 - 2) 위험작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3) 화재 위험작업 예방 교육 강화
3.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노동안전 경각심 제고

1. 건설현장 화재 안전성 강화

1 건설공사의 사전 안전성 확보

- **적정 공기보장 및 적격업체 선정 강화**
 - **공공·민간공사 모두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화**(건설안전특별법 제정)<국토부>
 - * (現) 적정 공기 산정의무는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에만 적용
 - 계획·설계단계에서 전체 및 작업별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무리한 공기 단축(예시: 전문가 안전성 검토 무시)을 지시할 경우 **형사처벌**
 - **불량 건설업체 명단 공개 추진**<노동부>
 - * (現) 불량현장 사고사망만인율 → (改) 불량기업체 사고사망만인율
 - 발주자 등이 안전 시공능력을 확인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도록 유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현장작동성 및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관리 강화**<노동부>
 - 사망사고 위험요인 중심으로 개편·간소화하여 현장의 안전활동 지침서로서의 활용성 강화
 - 화재폭발 등 위험작업 일정을 사전신고토록 하고, 불시확인점검 확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 투명성 강화
 - 현장의 위험요인 개선에 충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 예시) 회계시스템 항목 포함,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의 경우 사용실적 공개 등
-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 의무화**<국토부>
 - 건설사의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現 임의가입)하고, 다수 인명피해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 * (現) 1인당 한도와 1사고당 한도 모두 적용 → (改) 1인당 보상한도만 적용
 - 보험료 일부를 공사원가에 계상하여 발주자가 부담토록 하고, 우수 시공사가 수주에 유리*하도록 보험료 편차 확대**
 - * 사고다발 → 보험료 상승 → 발주자 부담비용 증가 → 안전우수 시공사 선호
 - ** 회사별 보험료 계수 조정(예시) : (現) 0.5~2.0(4배) → (改) 0.5~4.0(8배)

2 건축자재 화재안전 기준 강화

□ 마감재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 강화 <국토부>

-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창고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마감재(외벽·내부) 화재안전 기준(난연이상)을 모든 공장·창고 등으로 확대
 - 샌드위치패널을 마감재로 사용 시에는 준불연*이상의 성능 확보
- * (난연) 700℃에서 5분 정도 대피시간 확보, (준불연) 700℃에서 10분 정도 대피시간 확보

< 공장·창고 건축물 건축자재 사용기준 >

구분		현행	개정안
외벽	마감재	난연 샌드위치패널 (3층 또는 9m 이상 건축물)	준불연 샌드위치패널 (모든 규모 공장·창고 등)
	단열재		
내부	마감재	난연 샌드위치패널(창고 600㎡, 공장 1,000㎡)	난연(난연미만시 심의, 전담감리)
	단열재	기준 없음	

※ 샌드위치패널 심재는 무기질(그라스울 등)로 단계적으로 전환* ('22~)

□ 내단열재·창호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 신설 <국토부>

- 공장·창고 등은 내단열재에 대해서도 난연성능을 확보
 - 난연성능 미만 단열재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예:냉장창고 우레탄 뿔칠*)에는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고, 단열재 공사 중 전담감리 배치
- * 우레탄폼 등 단열재의 화재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21~'25, KICT)
- 창호의 화재안전성능 기준도 독일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 국토부, 소방청, 연구기관, 전문가, 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속 마련
 - 인접건축물과의 이격거리(예:1.5m이내)에 따라 외벽에 방화유리창(화염·연기 30분이상 차단)을 적용(또는 스프링클러 설치)

□ 화재안전 품질인정제도 도입 <국토부>

-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성능과 업체의 품질 관리능력을 모두 평가하고, 기준 미달시 인정취소 등 행정제재*
 - * (現) 형사처벌만 가능 → (改) 형사처벌 + 행정제재로 시장 참여 제한
- 단열재·샌드위치 패널의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공장 불시점검 실시

3 화재위험 작업 중 안전조치 강화

□ 화재폭발 위험 작업의 동시작업 금지

- 가연성 물질 취급작업(단열재 등)과 화기 취급작업(용접·용단 등)의 동시작업 금지(안전보건규칙) <노동부>
- 동시작업 금지 위반 시 감리에게 공사중지 권한 부여(감리업무지침) <국토부>

□ 가스경보기, 강제환기장치 등 안전설비 설치 의무화

- 시공중인 건축물에 유증기 감지를 위한 가스경보기 설치 의무화(공사장 화재안전기준 제정) <소방청>
 - 가스경보기, 비상경보장치 등 설치비용을 공사비에 계상(표준품셈)
- 인화성 물질의 농도 기준을 설정하고, 인화성 물질 작업 시 제트팬, 국소환기장치 등 강제 환기장치 설치 의무화(안전보건규칙) <노동부>
 - * (現 안전보건규칙) 화재·폭발 예방을 위해 통풍·환기 등 조치(자연적 환기)
 - 제트팬 등 화재예방 장치에 대한 설치비용 지원(3차 추경, 712억원)
 - * 강제 환기팬, 가스농도측정기 등
- 화기작업시 사용하는 방화포에 대한 난연성능 기준 및 적정 사용 기준 마련(공사장 화재안전기준) <소방청>

□ 위험작업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 안전 전담감리를 도입하여 공공공사는 규모와 상관없이 배치, 민간공사는 상주감리 대상공사*에 배치 <국토부>
 - * (現) 준다중건축물, 3층 & 5천m² 이상 등 → (改) 2층 & 2천m² 이상 등
 - 감리에 의한 작업허가제 대상을 민간공사, 화재 위험작업까지 확대
- 원청에게 위험한 작업에 대한 조정의무 부과 <노동부>
 - 사전에 작업일시·내용·기간 등 정보 파악 및 하청업체들의 작업 조정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확대*(120억→50억)하고, 시공중인 건축물에도 화재안전관리자 선임(발주자) 의무화 <노동부, 소방청>
 - * <단계적 시행> 100억('20.7월) → 80억('21.7월) → 60억('22.7월) → 50억('23.7월)

4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

□ 화재발생 시 대피로 확보 등 긴급조치계획 수립 의무화<국토부>

- 공사 진행정도에 따른 적정 대피로 확보 및 비상대피 훈련을 포함한 긴급조치계획 수립(시공사) 의무화
 - 인·허가기관(지자체 또는 공공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 착공
 - *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의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개선(건진법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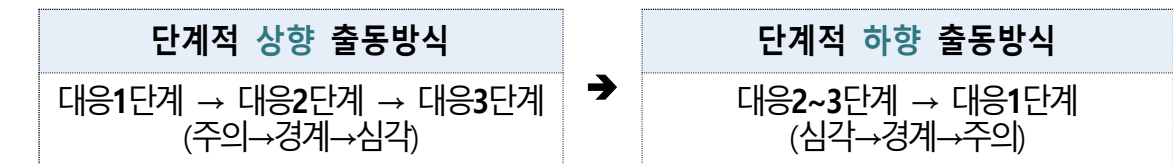
□ 화재발생을 가정한 비상 대피훈련 정례화<국토부>

-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위험이 높은 작업 착수 후에는 비상 대피훈련을 정기적(월 1회)으로 실시
 - 훈련 실시여부를 현장 감리·감독이 확인토록 하여 이행력 확보

□ 화재진압 및 인명피해 최소화 대응체계 구축<소방청>

- (지휘통제) 전국단위 119통합상황관리체계 구축(모니터링·지휘기능)
 - * 상황발생 초기에 신속한 상황판단으로 쏘 시·도 가용 소방력 파악 및 대응지시
- (출동체계) 시·도 경계지역 재난 현장 공동대응(관할 중심→거리 중심의 출동대 편성)
- (대응강화) 화재 초기부터 출동대 확대 편성,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대응단계 강화)

【 대응단계 강화】



- (인명구조) 화재현장 인명구조 우선 원칙에 따른 현장지휘 활동 및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중앙 및 시도·시군구 지역통제단)
 - * 인명구조 우선순위 : ❶인명위험이 절박한 부분 또는 층 → ❷중상자, 노인, 아이 등 위험도 높은 사람 우선구조 → ❸자력 피난 불능자 우선 구조 등

2. 위험작업 촘촘한 관리·감독

1 위험작업 실시간 파악 시스템 구축

□ 위험작업 신고제 등 도입

- 중소규모 현장(50~120억) 위험작업* 신고제 신설, 유해위험방지계획서(120억 이상) 현장에 대한 위험작업 시기 파악(산안법 시행규칙)<노동부>
 - * 예시) 배관작업(용접·용단 등), 미장방수도장(유증기 발생), 절단작업(그라인더 등에 의한 불티), 단열작업(우레탄폼 등 가연성 자재 사용) 등 화재폭발 위험작업
- 건설현장 기술지도 시스템(K2B)에 위험작업 신고 정보, 방지계획서의 작업공정 및 시기 정보, 착공신고 정보*(세움터)를 연계하여 위험현장과 작업시기 등 파악<노동부, 국토부>

* 세움터에 재해예방 기술지도기관 입력 등 의무화(건축법 시행규칙)



□ 건설근로자의 전자정보 활용<노동부>

- 스마트폰을 활용한 건설근로자 동선 감지(AI) 시스템* 구축,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시스템**을 통해 위험작업(용접 등) 현장의 위치 파악
 - * 안전보건서비스앱(위치정보기반서비스)을 근로자에게 설치토록 하여 근로자 위치를 통해 위험작업 현장 및 시기 파악(앱 설치 근로자에게 일정비용 지불)
 - ** 건설현장 출입관리 시스템(근로자의 작업 정보 포함)으로 현재 시범운영 중, '24.1월까지 공공 1억이상, 민간 50억이상 공사에 단계적 적용 의무화

□ 위험현장을 추출할 수 있는 안전보건정보 빅데이터 구축<노동부>

- 산재정보, 중대재해조사보고, 작업환경측정정보 등을 데이터화하여 고위험사업장, 취약시기 등을 자동으로 추출하여 적시에 맞춤형 지도·감독 추진
 - * 사업장 위험요인 등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데이터화(3차 추경, 302억원)

2 위험작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민간 (전문)인력을 활용한 순찰 확대

- 건설분야 경력자, 퇴직자 등 민간인력을 채용하여 순찰을 대폭 확대
 - 순찰 전 화재·폭발 위험공정 감시활동에 필요한 교육 실시

<민간 감시 체계 확대>

- 안전지킴이(안전공단): 現) 200명 → 改) 400명 (3차 추경, 200명 증원)
- 국민감시단(국토부): 국토관리청(5개) 청별 10~20명 시범운영 추진
- 안전보안관(행안부): 추락 등 위험시설물 → 화재위험 추가(1만여명, 통·반장 등)

□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지도 권한 부여

- 산안법에 지자체가 현장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노동부>
 - 자치단체별 산재예방 계획을 수립·이행, 건설현장 순찰·지도 및 개선 권고토록 지원
 - 중앙정부는 위험작업 시기 등 현장정보 공유(K2B), 재정 및 교육 등 지원
 - * 화재·폭발 점검 매뉴얼 제작·배포, 산업안전감독관·안전공단·지자체 합동 교육 등
-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통한 지자체의 건축현장 관리기능 강화<국토부>
 - * 광역 시·도 및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지역 건축안전센터 설치(~'21)

□ 안전을 경시하는 현장은 즉각 패트롤 및 감독과 연계

- 민간순찰자, 지자체 등이 위험현장 발견시 노동부 또는 안전공단에 통보
 - 신속하게 점검 또는 감독과 연계
- 패트롤 점검을 '화재' 사고까지 확대, 감독은 불시점검 방식
 - * 패트롤카 확대 '19년 27대 ⇒ 108대 <3차 추경, 81대 증차>
- 관계부처(노동부·국토부·소방청·지자체) 합동 정기적 조사·점검

- ◆ 산재예방 및 보상 분야의 전문성·총괄 기능강화를 위한 산업안전행정체계 개편 검토
- ◆ 지자체의 사업장(건설현장) 안전관리 조직 강화 협의

3 화재 위험작업 예방 교육 강화

□ 사업주 화재예방교육 강화

- 사업주가 직접 화재 사고 예방에 관심을 갖도록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에 화재 위험요인·조치 등에 대한 내용 추가

* 50인 미만(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사업주가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이수 시 1년간 산재보험료 10% 할인

□ 현장관리자, 화재감시자의 화재예방 역량 강화

- 화재 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방활동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 화재발생시 위기대응 능력향상

* 한국소방안전원 14개 지부, 안전공단 6개 광역본부 전문교육과정 운영

- 화재예방 및 화재발생 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실습중심으로 실시

□ 근로자에게 위험요인 및 대응요령 주지

- 건설 일용직 근로자 채용 교육 시 화재·폭발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피난교육 내용을 추가*

* 안전보건교육 규정(노동부고시) 개정을 통한 화재·폭발예방 교육시간 의무배정

- 용접·용단·도장 등 위험작업에 대한 직업훈련 과정에 화재위험요인 및 예방에 대한 교육을 포함

- 화재폭발 등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

* 산안법 제52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토록 규정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모국어안전교육' 확대*

* 결혼이주여성을 안전보건 분야 전문 통역인으로 지속 양성하여 모국어 안전교육 지원

- 모국어 표지(위험물, 피난유도선 등) 및 안내방송(화재 알림 방송, 대피 방송) 자료 제작·배포

□ 표준매뉴얼 지원

- 현장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위험작업별 안전조치 표준매뉴얼* 보급

* 위험작업별 매뉴얼 구성, 현장실태를 반영한 실질적 조치·방법 중심으로 개발

3.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노동안전 경각심 제고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정형 상향의 실효성 확보

< 산업안전보건법 법정형 상향 주요 내용('20.1.16 시행) >

- (1)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가중처벌 규정 신설**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5년 내 재범 시 형의 1/2까지 가중
- (2) 법인에 대한 벌금형 상향: 1억 → 10억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형기준 개선 추진 <법무부>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의 양형기준 개선 협의 추진 <노동부>

※ 5.4. 양형위원회 의견서 제출, 6.3. 노동부장관, 양형위원장 면담

<양형위원회 의견 제시 내용>

-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을 독립범죄군으로 설정*하고,
* 산재사고는 개인 과실이 아닌 기업범죄의 차원에서 접근 필요
- ◆ 기업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토록 건의
* 기업에게는 경제적 제재가 유일·효과적 수단
→ 기업 벌금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안전투자 유인

□ 기업과 경영인의 사업장 안전에 대한 관심과 책임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 <노동부>

○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보고 규정 등 신설

○ 법인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예: 과징금 제도 등) 마련

※ 법인과 경영책임자 책임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중(5월~)

□ 「다중인명피해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추진 <법무부>

○ 다중이용시설, 산업재해 등으로 다수 사망자 발생 등 다중인명 피해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V. 향후계획

□ 정책 추진현황 점검

- 현안조정회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 협의회 등을 통해 관계부처 이행실태 점검(분기 1회 이상)
 - 세부과제 이행에 따른 법령개정, 예산안 확보 등 지속 점검

□ 제도개선(법령 등 제·개정) 추진

- 고시 등 행정규칙은 즉시 개정작업 착수 → '20.10월 개정
-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은 7월 중 개정안 마련 → '20.12월 개정
- 법률은 7월 중 제·개정안 마련 → '20.12월 제·개정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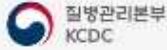
□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홍보 강화

- (대국민 홍보) 대책의 현장안착을 위해 카드뉴스, TV 영상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핵심메시지 상시 전파(연중)
 - *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방송 캠페인 집중 송출(TV, 라디오), 산업안전전광판(40개소) 및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의 전광판에 화재대책 중점 추진사항 지속 노출
 - 홍보 타겟별(업종, 사업주·근로자 등)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영상기법(V-Log, 애니메이션 등)의 콘텐츠 제작
- (건설주체 대상) 발주자, 시공사, 민간산재예방기관, 협회 등에 화재 대책 중점 추진사항 공유 및 사고사례 전파를 통한 유사사고 예방
- (점검·감독) 중점 점검사항(동시작업 금지 등) 등 감독방향에 대한 사전 안내·홍보를 통해 사업장의 자율개선 유도
 - * 중소규모 현장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기술지원과 연계를 통한 현장 수용성 강화

참고 1

화재대책 이후 주체별 역할 변화

	현 재	개 선
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 소속·산하기관만 적정 공사기간 산정 ▪ 공사기간 단축 제재 부재 ▪ 안전 시공능력 있는 적격업체 선정 한계 ▪ 시공 중 건축물의 임시소방시설 미흡 ▪ 근로자 재해보험 비용 미부담 → 무관심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민간 공사 모두 적정 공사기간 산정 ▪ 무리한 공기단축 시 형사처벌 ▪ 정보 제공을 통한 적격업체 선정 유도 ▪ 가스경보기 설치 의무화 및 공사비에 설치 비용 계상 등 ▪ 보험비용 부담 → 안전우수 시공사 선정 ▪ 시공 중 건축물에도 화재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시공 (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작업(화재·폭발 등) 실시 현황 파악 한계 ▪ 복잡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활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불용 등 사용관리 미흡 ▪ 화재폭발 위험작업의 빈번한 동시작업 ▪ 인화성 물질 취급시 자연환기 ▪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부족 ▪ 발주자에게만 작업혼재로 인한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의무 부과 ▪ 비상연락망 등 형식적 긴급조치계획 수립 ▪ 전사용 대피훈련 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작업 일정 사전신고 ▪ 위험요인 중심으로 간소화 및 활용성 강화 ▪ 현장 위험요인 개선에 충분히 사용토록 개선 * 회계시스템 항목 포함, 사용실적 공개 등 ▪ 가연성 물질 취급작업과 화기 취급작업의 동시작업 금지 의무화 ▪ 인화성 물질 취급시 제트팬 등 강제환기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확대(120억→50억), ▪ 원청에게 위험한 작업에 대한 조정 의무 부과 ▪ 비상 대피훈련 실시계획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긴급조치계획 수립 ▪ 비상 대피훈련 월 1회 실시
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단열재 사용기준 부재 ▪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 시 공사중지 ▪ 안전과 공정·품질 등의 업무 겸임 ▪ 작업허가제 대상 : 공공공사의 가설·굴착 등 추락사고 위험 공사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연 이상 내단열재 사용, 가연성 사용 시 전담감리 배치 ▪ 동시작업 금지 위반 시에도 공사중지 ▪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감리 배치* * (공공) 전체, (민간) 상주감리 대상 ▪ 민간공사 및 화재 위험작업까지 작업허가제 대상 확대 ▪ 비상 대피훈련 실시여부 확인



꼭!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국민 예방수칙



물과 비누로 꼼꼼히 자주 손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피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특히 노인·임산부·만성질환자 등은 외출 시 마스크 꼭 착용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1~2일 경과 관찰하며 집에서 휴식하기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자제
관할 보건소, 1339, 지역번호+120으로 먼저 상담하기



의료기관(*선별진료소) 방문 시 마스크 꼭 착용 및 자차 이용 권고

*선별진료소 안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확인,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문의



진료 전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호흡기 질환자 접촉 여부 알리기



의료인과 방역당국의 권고 잘 따르기